

---

# 전미열대다량어위원회(IATTC) 98차 회의(재개) 참석 결과

---

2021. 11.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 I 회의 개요

□ **회의명** : IATTC 98차 회의(재개)\*

\* 영문명 : 98th Meeting of the IATTC(Resumed)

□ **회의 목적**

- IATTC 회원국 이행 사항 검토
- 2022년, 2023년 사무국 예산안 검토
- 발효 중인 보존조치 검토 및 개정 논의, 새로운 관리조치 수립(항만국, 열대 다랑어 등) 관한 논의 등

□ **일시/장소** : ‘21.10.18.(월)~10.22.(금)\*/화상회의

\* 한국 시간 기준: 21.10.19.(화)~10.23(토), 00:00-03:00

□ **참석자**(약 100여명) : 한국, 미국, 일본, EU, 대만, 멕시코, 니카라과 등 회원국 (21개국) 대표단 및 CNCP(5개국) 대표단, NGO 등

○ 한국 대표단

이름	기관 및 직위	비고
오성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수석대표
김재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정부대표
백상진	원양산업협회	자문
박진석	사조 산업	업계
주승현	사조 산업	업계
조보람	동원 산업	업계
강승권	동원 산업	업계

○ 해외수산협력센터 참석자 : 김수민 전문관

□ **협력센터 전문관 업무**

○ 사전문서 검토 및 회원국 제안서 정리, 회의기간 중 회의록 작성

□ **주요 의제**

- 열대성 다랑어 보존조치 [CMM 20-06] 개정
- 항만국 검색 최소 기준에 대한 결의
- 눈다랑어 초과어획 제한 프로그램(IVL) 도입에 따른 예산안 증가

## II 주요 논의 결과

### 1 열대성 다랑어 보존조치에 관한 결의

#### □ 활성화된 FAD 설치 개수 (현 보존조치 8항)

- 6등급 선망선 기준 설치 개수 조정 합의

	현행	USA, COL, ECU	SLV, GTM, NIC	합의 결과
6등급 (1,200m <sup>3</sup> 이상)	FAD 450	2022년 380 2023년 350 2024년 315	2022년 410 2023년 380 2024년 350	2022년 400 2023년 340 2024년 340

#### □ 위성 부이 비활성화 구역 논의

- (의장 제안서 내용)

	내용
위성부이 비활성화	FAD에 부착된 위성 부이 비활성화는 아래 상황이 일어날 경우에만 가능함: - 신호 수신 위치의 소실, 정박(beaching), 제3자에 의한 도용, 선택적 금어기 동안, 안티구아 협약 구역 외에 있는 것, 선박의 일상적 어획 활동 이외의 곳에 있는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 CPC는 사무국에게 부속서2에 명시된 세부적인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여 보고하거나 선박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함. 보고서는 한달 간격(intervals)으로 제출하며 최소 60일 지체할 수 있으나 비활성화 직후 90일을 넘길 수 없음

- (주요 의견)

- (과학 담당관) 비활성화 구역에 대한 조사 구역 8N 10S 구역 권고함
- (과학 담당관) 현재 해당 조치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적용 수역을 설정하기 어려움 표명. 이 조치를 통하여 꾸준히 데이터를 수집하여 앞으로 적용 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길 권고
- (에콰도르) 150°W, 100-150W, 8N-10S and 100-towards the American continent 5N-15S 제안하여 다수 회원국 동의

## □ 눈다랑어 어획 제한 조치 제안 논의

- IVL(individual vessel limit) 체계를 도입하여 눈다랑어 어획을 관리 및 제한
- (제안서 내용)

분류	주요 내용										
2022년 어획 제한 기준	2022년의 경우, CPC는 2017년, 2018년, 2019년 선망선이 눈다랑어를 부유물체 또는 부상군 세트로 평균 1,200mt 이상 어획한 경우 금어기 <b>8일</b> 이 추가됨 2017-2019년 사이 2년만 어획한 경우, 2년가 어획의 평균에 따라 계산하며, 1년만 어획한 경우 해당 년도의 어획 데이터에 따라 본 조치를 이행한다.										
2023, 2024년 어획 제한 기준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이전 년도 눈다랑어 연간 1,200mt를 초과 어획한 선박에 대해 추가 금어기 <b>10일</b> 추가할 것  동일 기간 내 연간 눈다랑어 어획량이 아래 수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어기 일수가 추가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초과어획 수준 (t)</th> <th>추가 금어기 일수</th> </tr> </thead> <tbody> <tr> <td>1500</td> <td>13</td> </tr> <tr> <td>1800</td> <td>16</td> </tr> <tr> <td>2100</td> <td>19</td> </tr> <tr> <td>2400</td> <td>22</td> </tr> </tbody> </table>	초과어획 수준 (t)	추가 금어기 일수	1500	13	1800	16	2100	19	2400	22
초과어획 수준 (t)	추가 금어기 일수										
1500	13										
1800	16										
2100	19										
2400	22										

- (주요 의견)

- (과학 담당관) IVL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항구 샘플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사무국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해 우려점을 표명함

- (결과) 며칠간 추가 금어기 일수 설정에 합의점 도달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1,200mt 초과 어획 기준 2022년 8일, 2023-2024년 10일 설정에 다수 회원국 동의하였으며 채택됨

## □ 선망어업 VMS 데이터 제출 의무 이행

- 선망 어업에 따른 과학 조사를 위해 VMS 데이터를 사무국으로 제출할 것에 대해 보존조치에 추가할 것을 논의함

○ (주요 의견)

- (엘살바도르) 옵서버 승선율 100퍼센트 이행으로 VMS 데이터 제출이 불필요함을 표명
- (과학 담당관) VMS 데이터 제출은 옵서버 승선률과 별개의 자료를 수집할 기회를 어필하며 중요성 확인
- (중국) 데이터 제출은 두 달에 한 번 제출하는 것 제안하였으며 이는 회원국에게 동의 얻음
- (미국) 국내법 사정상 2022년에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2023년에 이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 동의 얻음

○ (결과) VMS 데이터 제출을 위하여 사무국에서 제출 양식을 만들어 내년 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인 후 동의를 얻기로 합의함

□ 연승어업 눈다랑어 연간 총 어획

○ 2022, 2023, 2024년 눈다랑어 연승 총 어획이 55,131mt/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2022-2024 (mt)
중국	2,507
일본	32,372
한국	11,947
대만	7,555
미국	750

## □ 결의안 내용

내용	
범위	
5	본 결의안의 어떤 규정도 국제법에 따른 회원국 및 협력적 비체약국 (이하 CPC)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특히, 이 결의안의 어떤 규정도 국제법에 따라 입항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본 결의안보다 더 엄중한 규칙을 채택하는 것 등을 포함한 CPC의 항구에 대한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본 결의안은 해당 국제 규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국제 해사 기구 및 기타 국제 기구에서 수립한 것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게 해석 및 적용한다. CPC는 본 결의안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고, 이 협정에서 인정된 권리를 권리남용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지 아니한다.
6	CPC 항구의 역량이 있는 CPC는 본 결의안을 적용하여 IATTC 관리 구역에서 어획된 IATTC 관리 어종에 대한 외국 선박의 효과적인 항구검색 체계를 적용한다.
7	항만 CPC 중 외국 선박 중 당국에 의해 권한이 있는 용선에 대해 본 결의안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용선의 경우 CPC의 조치에 따르며 CPC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적용된 선박에 대한 조치와 같은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
8	외국 선박 및 20m 또는 그 이상의 선박의 선박에 대한 모든 전재에 적용된다
9	각 CPC는 체장 20m 이하의 외국 선박, 7항에 명시된 외국 용선, IUU에 대항할 수 있는 조치에 따라 어획하는 기국 선박 포함할 수 있다. 본 조치를 적용하는데 있어 CPC는 다른 선단의 특징을 고려할 수 있다. CPC는 IATTC 사무국장에게 본 항에 명시된 조치의 범위 적용에 대해 통지한다.
10	CPC는 필요 행동을 취하여 어업 선박 선박주, 항해사, 선장들에게 통지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연락 담당자	
11	CPC 중 외국 선박의 항구 접근을 허가할 희망이 있는 CPC는 17항에 따라 관련 통지를 제공받기 위해 연락 담당자를 정한다. 28c에 따라 검색 보고서를 제공 받기 위해 각 CPC는 연락 담당자를 지정한다. 성명, 연락 정보를 IATTC 사무국장에게 본 결의안 채택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IATTC 사무국장에게 즉시 통보하며 효력이 발생하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12	IATTC 사무국장은 CPC가 제출한 목록을 바탕으로 연락망 기록부를 제작 및 관리한다. 등록부 및 어떠한 차후 변경에 대해서 즉시 IATTC 웹사이트에 게재

내용	
지정항구	
13	외국 조업선의 입항 허가를 희망하는 각 CPC는 항구를 지정한다.를 지정하도록 권장한다.
14	외국 조업선의 입항 허가를 희망하는 각 CPC는 검색을 이행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5	외국 조업선의 입항 허가를 희망하는 각 CPC는 본 결의안이 효력이 발생하기 30일 이전에 지정된 항구 목록을 제출한다. 변경 사항이 효력이 발생하기 14일 전에 사무국장에게 변경 사항에 대해 통지한다.
16	IATTC 사무국장은 CPC가 제공하는 목록을 바탕으로 지정 항구 기록부를 제작 및 관리한다. 기록부 및 향후 변경 사항은 즉시 IATTC 웹사이트에 게재

내용	
<b>사전 통보</b>	
17	<p>입항을 희망하는 외국 선박의 경우 양륙 및 또는 전재의 목적이 있는 선박은 입항 예정 48시간 이내에 하기 사항을 제공</p> <p>a) 선박 식별 (외부 식별, 선박명, 기국, IMO 번호, 해당하는 경우, 및 IRCS)</p> <p>b) 지정 항구명, IATTC 등록부에 기재된 대로, 입항 요청 목적 (양륙 및/또는 전재)</p> <p>c) 어업 허가 또는 적절한 경우, IATTC에서 관리되는 어종 및/또는 해당 어종에서 기원된 어류 제품 또는 전재 관련 어업 제품을 어업 허가해주는 선박이 소유하는 허가증</p> <p>d) 입항 도착 예상 날짜 및 시간</p> <p>e) 각 IATTC 관리 어종 및/또는 어업 제품의 추정된 양 (kg) 및 관련 어획 수역. IATTC 어종 및/또는 어업 제품이 없는 경우 'nil' 보고서가 제출되어야함</p> <p>f) 양륙 또는 전재될 IATTC 관리된 어종 및/또는 해당 어종으로부터 제조된 어업 제품의 추정된 양(kg)의 추정된 양 및 관련 어획 수역</p> <p>항민국 CPC는 IUU에 참여한 선박을 식별하기 위해 추가 보고를 요청 할 수 있다</p>
18	IATTC 사무국은 통지 절차에 사용될 양식을 정리하여 각 CPC에게 회람한다.
19	항민국 CPC는 수산물 종류 및 항만과 어업 활동장 사이 거리에 따라 17항에 명시된 통지 기간보다 더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항민국 CPC는 IATTC 사무국장에게 통지하여 IATTC 웹사이트에 즉시 관련 정보 게재
20	항민국 CPC가 입항을 허가할 경우, 하기 사항을 포함한 항구 검색이 진행될 수 있다

내용	
<b>항구 검색</b>	
21	항민국 CPC의 권한 당사자에 의해 진행된다
22	최소 5%의 양륙 및 전재를 검색한다
23	<p>항민국 CPC는 국내법에 따라 어떤 외국선박을 검색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p> <p>a) 외국 선박이 17항에 따라 필요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은 경우</p> <p>b) 다른 CPC 또는 기타 수산관리 기구의 요청이 있어 IUU 어업이 의심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있을 경우</p> <p>c) RFMOs에서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IUU 어업에 참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날 경우,</p>

내용	
<b>검색 절차</b>	
24	항민국 CPC에 의해 발급된 신분 문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국내법에 따라 항민국 CPC는 모든 관련 지역, decks 그리고 선박의 선실, 어업이 진행된 공간, 망, 또는 기타 어구, 기술적 또는 전자 장비, 전송 기록 및 기타 문서들 어업 로그북, cargo manifest 및 Mates receipts 및 양륙 신고서(전재의 경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선박주 및 검색 대상 선박의 사람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25	검색은 양륙 또는 전재를 포함하며 전재/양륙을 위해 보고된 어종의 양과 실제 양의 교차 점검을 포함한다. 검색은 선박에게 최소한의 간섭 및 불편 정도로 이루어지며 어획량의 평가 절하는 최소한으로 피한다.
26	검색이 완료된 후 관련 보고서를 외국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되며, 이는 검색에서 발견한 것, CPC의 권한당국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는 조치에 관련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검사관은 보고서를 서명한다. 선장은 이 보고서에 대해 의견 및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기국 CPC의 권한 당국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선장에게 사본을 제공한다.
27	IATTC 사무국은 본 결의안이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까지 항구 검색에 사용될 양식을 개발하고 회람한다.
28	항민국 CPC는 검색 보고서를 기국 CPC에게 전자식 등의 방법으로 사본을 전송하며 검색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공한다. 30일 이내에 전송을 할 수 없는 경우 항민국 CPC는 IATTC 사무국장에게 연기에 대한 사유 및 전송 가능 날짜를 30일 기간 내에 통지한다.
29	기국 CPC는 선장이 선박의 안전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항민국의 CPC의 권한 당국과 협력하여 검색 및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항민국 CPC의 검사관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내용	
<b>위반시 절차</b>	
30	<p>위반이 확인될 경우, 검사관은 하기의 조치를 취한다:</p> <p>a) 검색 보고서에 위반을 기록한다</p> <p>b) 항민국 CPC 권한 당국에게 검사 보고서를 전송하며 이는 사무국장 및 기국 CPC 연락 담당자에게 빠르게 전달</p> <p>c) 적용 가능한 범위 까지, 위반의 증거를 안전하게 관리한다</p>

31	위반이 항만국 CPC의 국내 사법 관할권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이런 경우 항만국 CPC는 기국 CPC 및 사무국장에게 권할 당국에게 취한 조치에 대해 통지한다. 사무국장은 이를 IATTC 웹사이트에 게재
32	항만국 CPC의 사법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29항에 해당하며 항만국 CPC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기국, 및 관련 연안국에 언급한다. 기국 CPC는 보고서를 받은 즉시 조사를 하며 관련 위반에 대해 IATTC 사무국장에게 조사의 상태를 보고하며 제공 받은 후 6개월 내에 어떤 강제 집행이 요구 될 것인지에 대해 보고한다..... 6개월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집행 절차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함께 집행 날짜를 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IATTC 웹사이트에 보완된 페이지에 업로드한다. CPC는 조사에 대한 사항을 이행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33	결의 C-05-07에 따라, 검사를 통해 검색된 선박이 IUU 활동에 관여한 증거가 제공될 경우, 항만국 CPC는 즉시 기국 CPC에게 해당 사건을 보고하고 IATTC 사무국장에게 최대한 빠르게 관련 증거와 함께 통지한다.

내용	
<b>총칙</b>	
35	CPC는 협력을 촉진시키고, 정보를 공유하고 IATTC 결의안의 이행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검사 전략 및 방법에 대해 각 회원국의 검사관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검사관 교환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양자 합의장에 관여하도록 격려된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IATTC 사무국장에게 제공하여 이를 IATTC 웹사이트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한다.
36	항만국 CPC의 국내법을 침해하지 않고, 기국 CPC는 항만국 CPC와의 적절한 양자 협의 또는 준비가 있을 경우, 또는 해당 CPC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항만국의 CPC 검사관을 동행할 관리자를 보낼 수 있으며 선박의 검색에 참여하여 관찰할 수 있다
37	기국 CPC는 위반에 대한 항만국 CPC의 검사관의 보고서에 대하여 기국 CPC의 검사관의 보고서와 비슷한 기준으로, 국내법에 따라서 고려하고 행동하여야한다. CPC는 국내법에 준거하여, 결의안에 따라 작성된 검사 보고서에서 떠올린 법적 또는 기타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38	IATTC 사무국장은 모델 양식(model formats)을 본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사전 통지 보고서 및 검색 보고서를 위해 기타 관련 국제기구 및 기타 RFMOs에서 채택된 양식을 참고하여 제작하고 _연례회의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39	위원회는 본 결의안을 늦어도 20232024년 연례회의에서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효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기타 RFMOs 및/또는 국제 포럼을 참고하여 수정한다. 사무국은 본 조치의 이행에 대해 매년 보고한다.
40	본 결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주요 의견)

- (일본) 보존조치 도입 후 2-3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다음 검토 연도를 2024년으로 설정 제안
- 콜롬비아가 37항에 대하여 “CPCs shall consider — notwithstanding the above, the national regulations of each CPC shall prevail in particular, in their procedural rules and guarantees of due process”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일본이 이 항목의 의미 및 추가하는 것의 목적에 대해 질문하였음

○ (결과) IATTC에서 항만국 검색 보존조치를 수립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하며 다수 회원국 지지를 얻어 제안서 채택

## □ 참다랑어 관련 보존조치 개정

○ 우리나라가 참여한 IATTC-WCPFC 북방위 합동 작업반( '21.07) 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추가 논의 없이 채택

○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적용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2024년에 적용됨</li> <li>- 2018년 미어획 산란 자원량(SSB)의 SSB는 4.5%로 추정됨</li> <li>- 2021년 IATTC 과학 담당관 및 과학위의 권고에 따르면 어획 전략에 따라 어획을 증가시킬 수 있음</li> </ul>															
어획 제한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멕시코</th> <th>미국</th> </tr> </thead> <tbody> <tr> <td>2021-2022 격년 어획 한계</td> <td>6,556 mt</td> <td>739 mt</td> </tr> <tr> <td>2021-2022 중 1년 한정 최대</td> <td>3,824 mt</td> <td>523 mt</td> </tr> <tr> <td>2023-2024 격년 어획 한계</td> <td>6,973 mt</td> <td>1,017 mt</td> </tr> <tr> <td>2023-2024 중 1년 한정 최대</td> <td>4,068 mt</td> <td>720 mt</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2022년 중, 미국은 2년동안 총 739mt를 어획할 수 있으며 한해에 한하여 최대 523mt 어획할 수 있음. 2023-2024년 동안, 미국은 2년동안 총 1,017mt 어획할 수 있으며 한해에 한하여 최대 720mt 어획할 수 있다</li> <li>- 2021-2022년 중, 멕시코는 2년동안 총 6,556mt를 어획할 수 있으며 한해에 한하여 최대 3,824mt 어획할 수 있음. 2023-2024년 동안, 멕시코는 2년동안 총 6,973mt를 어획할 수 있으며 한해에 한하여 최대 4,068mt 어획할 수 있다</li> </ul>		멕시코	미국	2021-2022 격년 어획 한계	6,556 mt	739 mt	2021-2022 중 1년 한정 최대	3,824 mt	523 mt	2023-2024 격년 어획 한계	6,973 mt	1,017 mt	2023-2024 중 1년 한정 최대	4,068 mt	720 mt
	멕시코	미국														
2021-2022 격년 어획 한계	6,556 mt	739 mt														
2021-2022 중 1년 한정 최대	3,824 mt	523 mt														
2023-2024 격년 어획 한계	6,973 mt	1,017 mt														
2023-2024 중 1년 한정 최대	4,068 mt	720 mt														
초과 어획	2021-2022년 격년 초과 어획은 2023-2024년 어획 제한에서 차감한다															
과소 어획	2021-2022년 격년 과소 어획량은 경우 2023-2024년 어획 제한에 추가된다															
어획 제한 통지	사무국장은 2021-2024년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4-5항의 제한량에 초과 어획 및 과소 어획이 적용된 어획 제한량을 통지한다.															
과학적 권고	2021-2024년 동안 매년, IATTC 과학 담당관은 과학위에게 본 결의안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ISC의 최신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량 평가 결과, 어획 시나리오 예상안, 및 채택된 WCPFC 태평양 참다랑어 보존조치를 고려하여 발표한다.															

## 4 기타 보존조치에 대한 논의

### □ 상어 보존조치[C-19-05] 개정 제안서

#### ○ (주요 의견)

- (일본) SAC 또는 과학 담당관이 개정의 필요성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 불필요하며 현 보존조치 연장하길 표명
- (미국) 현 조치 연장하고 6항에 “IATTC 과학 담당관이 silky shark 출몰 수역들을 2022년 SAC에게 제시할 것”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중국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의문점 제기

#### ○ (결과) C-19-05 보존조치 2년 연장하기로 결론

### □ 연승선 과학 옵서버 승선에 대한 논의

#### ○ 제안서 내용 및 주요 의견

현행	ECU 제안	EU 제안	주요 의견										
(어획 노력) 연승 어획 노력은 조업일수 또는 낚시수	연승 어획 노력은 조업일수에 따라 결정	연승 어획 노력은 낚시수에 따라 결정	- (일본) 조업일수 기주 어획 노력 산정 기준 동의할 수 없음										
(데이터 제출)	회원국/CPC 권한 당국은 조업선에 대한 보고를 제공해야하며 이는 해당 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a) 활용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기술 보고서 b) 날짜 및 위치(경도 및 위도), 어종, 체장 분포에 대한 통계, 평균 사이즈 및 무게에 대한 일반적 정보	CPC는 사무국장에게 2022년 3월 31까지 역사적 및 현 기가 및 동일 날짜마다 연가 업데이트를 위해 연승선 로그북에서 과학적 담당관에 의해 개발될 양식에 따라 세트별 어획 및 노력 (TASK II 'level 1' 데이터) 및 부수적인 유역 전부를 제출한다. 보 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비밀 유지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결의안 C-15-07에 따라 처리된다.	- (일본) 현재 국내 과학자들은 합동 위원회를 통해 사무국에 필요한 전부를 제출하고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불요										
(EMS 도입)	- EMS 도입 점진적 증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적용 날짜</th> <th>승선율</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 1월 1일</td> <td>10%</td> </tr> <tr> <td>2023년 1월 1일</td> <td>20%</td> </tr> <tr> <td>2024년 1월 1일</td> <td>50%</td> </tr> <tr> <td>2025년 1월 1일</td> <td>100%</td> </tr> </tbody> </table>	적용 날짜	승선율	2022년 1월 1일	10%	2023년 1월 1일	20%	2024년 1월 1일	50%	2025년 1월 1일	100%		- (한국, 일본 등) EMS 도입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기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점진적 증가를 반대함 - (중국) EMS 수리를 위한 작업반의 지행 및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임 강조
적용 날짜	승선율												
2022년 1월 1일	10%												
2023년 1월 1일	20%												
2024년 1월 1일	50%												
2025년 1월 1일	100%												

#### ○ (결과) 일본, 중국, 대만이 제안서 내용을 반대하여 제안서 미채택

## □ 대형어선 전제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보존조치[C-12-07] 개정 논의

### ○ 제안서 주요 내용

	현행	에콰도르 제안서
적용 범위	트롤, 채낚기 또는 해양에서 신선 어류의 전제활동을 하는 어선 제외	트롤, 채낚기 또는 해상에서 신선 어류를 전제하는 24m 이하 어선 제외
기국 허가	참치 연승어선은 기국의 사전 허가 없이 해상 전제 승인 불가	참치 연승어선은 협약 수역 내 전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된 선박 기록부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기국의 사전 허가 없이 해상 전제승인 불가
전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제24시간 전 연승선 선장 및/또는 소유주는 적어도 24시간 전 선명, 운반선명, 종별 전제량, 전제 날짜 및 위치, 어획 위치 등을 기국에 보고</li> <li>- IATTC 전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제 후 15일 이내 제출</li> </ul>	<p>전제 전, 기국의 참치 연승선의 선장 및/또는 선박주는 전제 활동 최소 24시간전에 하기 정보를 기국의 권한 당국 및 항만국에게 통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참치연승선명 및 참치연승선 목록 번호, 선박 IMO 번호, 가늠하 경우)</li> <li>b. 운반선명 및 IATTC 운반선 기록 번호, IMO 번호, 그리고 전제될 품목</li> <li>c. 전제될 어종별 및 품목별 톤수</li> <li>d. 전제 장소 및 날짜, 및</li> <li>e. 참치, 기타 저층 어종 및 상어 어획된 지리적 장소</li> </ul>

### ○ (주요 의견)

- (일본) 현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전제 프로그램이 문제가 없으며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이 불요

### ○ (결과) 일본의 반대로 제안서 미채택

## □ IVL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분담금 증가

## ○ (주요 내용)

- 선망 어업을 참여하지 않는 중국이 모든 회원국이 해당 프로그램 예산을 분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음을 어필하였으나 2022년 파일럿 프로그램 한정적으로 모든 회원국 분담에 찬성함
- 분담금 책정 방식: 모든 회원국이 프로그램 예산의 50% 분담하며 나머지 50%는 IVL 참여 회원국 내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

## ○ 사무국 전체 예산

	2021년 예산 (approved)	2022년 예산 (requested)	2023년 예산 (예산액)
기존	\$8,133,837	\$8,309,063	\$8,512,865
IVL 추가 경우		\$8,919,796(▲\$785,959)	미정

## ○ 한국 분담금

	2021년 분담금	2022년 요청액	2023년 예상
기존	\$242,030	\$243,955(▲\$1,925)	\$251,531
모든 회원국 IVL 비용 1/N		\$266,659(▲\$24,629)	미정
IVL 예산의 50% 중 1/N		\$253,409(▲\$11,379)	미정